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45

발의연월일: 2021. 5. 17.

발 의 자 : 임오경ㆍ이상헌ㆍ유정주

김민철 • 박 정 • 이수진

박홍근 • 전용기 • 장철민

박성준 · 김성주 · 이규민

박상혁 · 오영환 · 서영교

한준호 · 최혜영 의원

(17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(文化享有)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'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(2019~20 23)'에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장애인, 노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 물관·미술관의 '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' 취득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물관 • 미술관

전시·관람 측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,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·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,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9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)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·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의3(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
	애인 편의성 보장 등) ① 박물
	관 및 미술관을 설립・운영하
	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및
	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
	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
	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
	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
	여야 한다. 이 경우 박물관 및
	미술관에는 장애인 관련 업무
	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
	<u>다.</u>
	②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・
	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
	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
	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기 위
	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